

## ○ 소득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산정표(신청연도)의 중위소득 150% 이하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며, 확인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신청자 및 가구원**(등본상 /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 **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을 역산 후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 : 원)

가구원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A)	혼합(B)
2인	5,185,000	미포함	183,861	186,476
3인	6,653,000	미포함	237,913	242,216
4인	8,102,000	미포함	291,898	299,947
5인	9,497,000	미포함	346,067	359,887
6인	10,842,000	미포함	403,785	434,962
7인	12,162,000	미포함	434,962	476,875
8인	13,481,000	미포함	521,613	563,270
9인	14,800,000	미포함	563,270	625,329
10인	16,120,000	미포함	625,329	729,187

### 가구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 ※ 가구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임신확인서 제출)
  - ▲ 부부가 주민등록 세대 분리 시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등본에는 ‘부’와 ‘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시 ‘모’가 등재 시 3인 가족으로 산정)
  - ▲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을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 친권자가 아닌 실거주를 함께 하는 자가 장려금 수급 시 친권자는 장려금 수급 불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필요
  -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 소득산정 예시

### ★ 자녀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한 명만 있다고 가정 시

※ (예시1) 아빠가 '23.1.1. ~ '23.8.1. 육아휴직 사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산정방법(아빠, 엄마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

1. 아빠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2. 엄마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 1번(아빠의 건강보험료 평균액)과 2번(엄마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산정

→ 1번과 2번 합산한 금액이 A(237,913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지급

※ (예시2) 아빠가 '23.1.1. ~ '23.8.1. 육아휴직 사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산정방법(아빠 직장 건강보험 가입/엄마 지역 건강보험 가입)

1. 아빠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2. 엄마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 1번(아빠의 건강보험료 평균액)과 2번(엄마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산정

→ 1번과 2번 합산한 금액이 B(242,216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지급

※ (예시3) 아빠가 '23.1.1. ~ '23.8.1. 육아휴직 사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산정방법(아빠 직장 건강보험 가입/엄마 피부양자)

= 아빠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소득산정

→ 아빠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A(237,913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지급

※ (예시4) 아빠가 '23.1.1. ~ '23.8.1. 육아휴직 사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산정방법(아빠 직장 건강보험 가입/엄마 직장 건강보험 가입/장모님 피부양자)

1. 아빠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2. 엄마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 1번(아빠의 건강보험료 평균액)과 2번(엄마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산정

→ 1번과 2번 합산한 금액이 A(291,898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지급

※ (예시5) 아빠가 '23.1.1. ~ '23.8.1. 육아휴직 사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산정방법(아빠 직장 건강보험 가입/엄마 직장  
건강보험 가입/장모님 지역 건강보험 가입)

1. 아빠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2. 엄마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3. 장모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 1번(아빠의 건강보험료 평균액)과 2번(엄마의 건강보험료 평균액)  
그리고 3번(장모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산정

→ 1번,2번,3번 합산한 금액이 B(299,947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지급